



# CIRCULAR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Republic of Korea

Phone : +82-70-8799-8506  
Fax : +82-70-8799-8419  
E-mail: ywkim@krs.co.kr  
Person in charge : Kim Young-wook

To :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

No : 2017-2-E  
Date : 2017.03.08

제 목 (Subject)	9.100 선급기술규칙 개정사항 시행 알림 (규칙 10편 및 지침 4편)
적 용 (Application)	2017년 3월 8일

1. 2016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10편 19장 및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4편 2장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이 내용은 2017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17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1) 우리 규칙에서 모래운반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 관련하여 항해구역을 "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로 표기하고 있어, 한반도의 범위를 본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규칙 본문중에 이미 창구덮개 면제 선박의 항해구역을 국내연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문구("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를 삭제하여 항해구역을 국내연해구역으로 명확히 함.  
이때 국내연해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별표 5(구분 5제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 2) 또한, 제주도로 항해하는 부선은 창구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첨부: 규칙 10편 및 적용지침 4편 개정사항 ----- 각1부.(끝)

기술본부장 김 창욱

<첨부>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개정(안)

제4편 선체의장

(제2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 102. &lt;생략&gt;</p> <p>104. 창구덮개</p> <p>1. ~ 2. &lt;생략&gt;</p> <p>3. 규칙 104.의 2항에서 우리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의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이란 모래, 토사, 자갈 등의 채취, 운반, 준설, 매립 등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p> <p>(1) 항해구역이 국내연해인 선박으로서 모래운반선 및 호퍼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다.</p> <p>(가) 호퍼 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 선박의 양현에 부력탱크와 선저에 호퍼도어를 갖는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갖는 선박</p> <p>(나) 호퍼 도어(hopper door)를 갖지 않는 부선 양현에 충분한 용량의 부력 탱크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 부력과 복원성을 갖는다고 인정되고 항해구역이 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를 운항(단, 제주도 항해 제외)하는 부선</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2 장 창구 및 기타 갑판개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일반사항</b></p> <p>101. ~ 102. &lt;생략&gt;</p> <p>104. 창구덮개</p> <p>1. ~ 2. &lt;생략&gt;</p> <p>3. 규칙 104.의 2항에서 우리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규칙의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이란 모래, 토사, 자갈 등의 채취, 운반, 준설, 매립 등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p> <p>(1) 항해구역이 국내연해인 선박으로서 모래운반선 및 호퍼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다.</p> <p>(가) 호퍼 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 선박의 양현에 부력탱크와 선저에 호퍼도어를 갖는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갖는 선박</p> <p>(나) 호퍼 도어(hopper door)를 갖지 않는 부선 양현에 충분한 용량의 부력 탱크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 부력과 복원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부선. 다만, 제주도로 항해하는 부선은 창구덮개를 설치하여야 함.</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

<첨부>

선급 및 강선규칙 개정(안)  
10 편 소형강선의 선체구조 및 의장  
(제19장 창구 및 기타의 개구)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9 장 창구 및 기타의 개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 제 4 절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b></p> <p>501.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p> <p>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는 다음의 경우 창구덮개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이라 함은 모래, 토사, 자갈 등의 채취, 운반, 준설, 매립 등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p> <p>1. 항해구역이 국내연해인 선박으로서 모래운반선 및 호퍼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호퍼 도어를 갖는 선박 및 부선 선박의 양현에 부력탱크와 선저에 호퍼도어를 갖는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갖는 선박</p> <p>(2) 호퍼 도어를 갖지 않는 부선 양현에 충분한 용량의 부력 탱크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 부력과 복원성을 갖는다고 인정되고 항해구역이 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를 운항(단, 제주도 항해 제외)하는 부선</p> <p>&lt;이하 생략&gt;</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9 장 창구 및 기타의 개구</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1 절 ~ 제 4 절 &lt;생략&gt;</b></p> <p style="text-align: center;"><b>제 5 절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b></p> <p>501.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p> <p>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의 창구덮개는 다음의 경우 창구덮개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모래운반선 및 채취선이라 함은 모래, 토사, 자갈 등의 채취, 운반, 준설, 매립 등에 종사하는 선박을 말한다.</p> <p>1. 항해구역이 국내연해인 선박으로서 모래운반선 및 호퍼도어(hopper door)를 갖는 선박 및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요건은 다음과 같다.</p> <p>(1) 호퍼 도어를 갖는 선박 및 부선 선박의 양현에 부력탱크와 선저에 호퍼도어를 갖는 선박으로서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부력과 복원성을 갖는 선박</p> <p>(2) 호퍼 도어를 갖지 않는 부선 양현에 충분한 용량의 부력 탱크를 가지고 있어 화물창의 가상 최악의 침수상태에서도 충분한 예비 부력과 복원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부선. 다만, 제주도로 항해하는 부선은 창구덮개를 설치하여야 함.</p> <p>&lt;이하 현행과 동일&gt;</p>